

## 목포시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249
----------	-----

발의년월일 : 2001. 4.

발 의 자 : 박 성 원 의원의 18명

### 1. 제안 이유

유통업계의 현대화, 대규모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래시장이 위축되어 재래시장의 유통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목포시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유형별 특화사업에 관한 재래시장 연합회의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협의·자문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목포시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기능(안 제2조)

- 재래시장의 발전에 관한 사항
- 재래시장별 유형별 차별화 된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나. 목포시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구성(안 제3조)

-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부시장을 포함 5인 이내로 하고 시의원 2인, 목포시 관내 재래시장 대표 5인 이내,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3인 이내로 한다.
-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장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다. 위원회의 회의(안 제6조)

- 정기회 회의는 분기별 1회로 한다.
-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위원의 1/3이상 회의개최 요구가 있을 때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라. 예산의 지원(안 제7조)

- 재래시장 특화 및 유통산업활성화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반영

마. 실비보상(안 제8조)

-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목포시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없음.
5.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6. 관련부서 의견 : 특이의견없음.
7. 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8. 기타참고사항 : 해당없음.

목포시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유형별 특화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 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협의한다.

1. 재래시장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재래시장별 유형별 차별화 된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
3. 기타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부시장을 포함 5인 이내로 하고, 시의회 의원 2인, 목포시 관내 재래시장 대표 5인 이내,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3인 이내로 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장관련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내에 직책의 변동이 있을 경우의 임기는 당해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원의 역할)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 궐위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회의 및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갖는다.

- ① 정기회 회의는 분기별 1회로 한다.
-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위원의 1/3이상 회의개최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재래시장 특화 및 유통산업활성화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보상)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목포시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